



호주의 주류산업 현황

본고는 대한주류공업협회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에 의뢰하여 조사한 "호주의 주류산업현황" 보고서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 목 차 ■

I. 호주 주류산업 현황

1. 최근 주류시장 동향
2. 주요 주류의 수출입 동향

II. 지원제도 및 정부규제

1. 지원제도
2. 정부규제사항

III. 주류 수입 관리제도

1. 수입허가요건
2. 수입절차

IV. 주류관세

V. 주류내국세

VI. 연료용 알콜

I. 호주 주류산업 현황

최근 3년간의 맥주, 포도주 및 양주의 호주 시장 판매실적을 보면, 맥주는 국내생산량이 매년 1.6%~1.8%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산은 매년 17%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2/03년의 경우 총1,709백만 리터중 수입산이 47백만 리터로 전체시장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포도주와 양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맥주시장은 거의 성장없이 매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Carlton & United Breweries의 경우 2003/04년 상반기의 생산은 전년동기비 1.6% 감소한 55백만 박스만을 생산하는데 그쳤으며, 호주의 전체 국내 생산도 1.2% 감소하였음.(자료 : Financial Review) 주요 맥주 생산업체 (Brewery)는 Fosters Group의 Carlton & United Breweries, Lion Nathan Group 등 60여개 업체가 있음. 소매되는 맥주의 포장형태는 병의 경우 355ml, 375ml, 700ml, 800ml 등이며, 대부분이 손으로 돌려서 마개를 열 수 있는 스티비(Stubby) 방식을 쓰고

〈표1〉 최근 3년간 호주의 주류 판매 현황

[단위 : 맥주 및 포도주-백만리터, 양주-알콜 천Lal's)]

구 분	2000/01				2000/02				2000/03			
	국 내 생 산	수 입	계	증 감 (%)	국 내 생 산	수 입	계	증 감 (%)	국 내 생 산	수 입	계	증 감 (%)
맥주	1,720	32	1,752	1.4	1,689	40	1,729	-1.3	1,662	47	1,709	-1.2
포도주	384	13	397	2.1	386	14	400	0.8	420	16	418	1.0
소계	2,140	45	2,149	1.6	2,075	54	2,129	-0.9	2,063	63	2,126	-0.1
양주	10,425	22,572	32,997	16.2	8,335	23,401	31,736	-3.8	8,994	24,961	33,955	7.0

- 자료) - 호주통계청(ABS) International Trade Data
 - 호주 연방 외교무역부 발간 Australia Now: The Australian Wine Industry
 - Australian Wine and Brandy Corporation 2002-2003 Annual Report
 참고) - 회계연도 기간 기준 : 7월1일~익년 6월30일
 - 증감 :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 수입주류 : 통관기준 통계
 - 국내산 주류 : 총 국내생산 중 판매된 주류 통계

있으며, 캔의 경우에는 375ml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맥주의 알콜도수는 Light Beer가 1.5~2%, 보통맥주가 4.5~5%, 그리고 Bitter Beer가 5.5~7%의 범위임

국가 권장산업인 포도주는 2002년의 경우 UN의 FAO에 따르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미국에 이어 세계 5대 생산국이 되었으며 한 해 동안 12억2천만 리터를 생산하여 전 세계 생산량 268억 리터중 4.6%를 차지하게 되었음. 2002/03 회계연도의 국내생산은 919 백만 리터였으며, 이중 44%인 402백만 리터를 국내 판매하고 56%인 517백만 리터를 수출하여 2001/02년에 이어 수출이 국내소비를 앞지르게 되었음. 호주의 국내산 포도주의 소비(국내소비 및 수출 포함)는 2001/02년 805 백만 리터, 2002/03년에는 전년비 14.5% 증가한 921백만 리터, 그리고 2003/04년에는 8.3% 증가한 997백만 리터

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호주의 세계적인 포도주 양조업체로는 Southcorp Wines, BRL Hardy, Orlando Wyndham Group 등이 있으며 소규모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총 1,798개이며, 주종 포도주의 알콜도수는 10~14% 범위임.

양주(증류주로 소주도 본 통계에 포함됨) 시장의 경우 2001/02년에는 국내생산이 8,335 천Lals(알콜리터)로 전년동기비 20%의 감소를 보여 국내 양주생산의 불황을 보였으나 다음 해인 2002/03년에는 8%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수입산 양주는 2002/03년의 경우 총 33,955 천Lals 중 24,961 천Lals로 전체시장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맥주나 포도주보다는 양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음.

2. 주요 주류의 수출입 동향

1) 주류별 수출현황

호주의 최근 3년간 수출통계를 보면 음료(HS Code 22류)의 전체 수출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금년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맥주의 경우 2001년 이후 3개년간 매년 수출이 증가하여 왔으나 2004년 상반기 중에는 전년동기 대비 27%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음. 2002년 이후 호주통계청의 맥주류 수출실적의 국가미분류 통계발표로 국가별 비교는 어려우나 호주의 주요 수출국은 아랍에미레이트, 뉴질랜드, 한국, 바레인,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나타나 있음.

포도주와 베르못류의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여 왔으며 금년 상반

기중에도 30%를 넘는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호주의 포도주 수출은 매년 급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지난 3년간 스위스와 프랑스를 제외한 수출대상국의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호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2003년의 경우 총 US\$1,544백만 중 US\$547백만으로 35% 점유), 영국(34%), 캐나다(8%), 뉴질랜드(4%), 독일(3%), 일본(2%) 및 유럽국가 들이며, 최근 들어서는 싱가폴(1%), 홍콩(0.7%), 말레이시아(0.4%), 중국(0.2%), 한국(0.2%) 등 아시아 국가들도 주요 수출시장 되고 있음. 베르못의 경우 수출규모는 미세하나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뉴질랜드(2003년 총수출액 US\$ 461천 중 점유율 78%), 말레이시아(11%), 싱가폴(10%) 등이며 한국은 실적이 없음.

〈표2〉 연도별 및 품목별 수출실적(HS 22류 총괄)

(단위 : US\$,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1~6)	
		금 액	증감	금 액	증감	금 액	증감
총 계	1,100,437,984	1,389,480,061	26.3	1,665,719,450	19.9	997,666,633	28.7
비감미 음료	1,978,470	1,209,758	-38.9	1,238,816	2.4	535,194	-10.0
감미 무알콜 음료	9,761,368	13,389,298	37.2	17,748,181	32.6	7,920,643	-10.4
맥 주	27,999,375	35,742,843	27.7	40,444,658	13.2	16,520,627	-27.1
포 도 주	996,933,405	1,277,545,747	28.1	1,544,034,495	20.9	943,865,428	32.5
베르못	371,487	452,316	21.8	460,804	1.9	291,535	31.0
과실 · 곡물 발효주	15,269,399	12,973,708	-15.0	11,312,814	-12.8	4,114,696	-38.6
무변성 · 변성주정	11,247,642	15,050,729	33.8	13,727,324	-8.8	5,759,557	-19.2
증류 주	36,645,721	32,836,687	-10.4	36,413,852	10.9	18,473,734	10.8
식초 및 초산	231,117	278,975	0.7	338,506	21.3	185,219	-4.1

주) - 이하 통계 자료원 : 호주통계청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증감 :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표3〉 품목별 및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국가별 세부 수출실적은 원문참조)

① 맥주 (HS: 2203)

(단위 : US\$, %)

국가별	2001	2002		2003		2004 (1~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27,999,375	35,742,843	27.7	40,444,658	13.2	16,520,627	-27.1
한 국	2,149,724	1,401,837	-34.8				

* 2002년 이후 호주통계청(ABS)의 통계실적의 국가미분류 집계로 국가별 비교 불가

② 포도주 (HS: 2204)

(단위 : US\$, %)

국가별	2001	2002		2003		2004 (1~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996,933,405	1,277,545,747	28.1	1,544,034,495	20.9	943,865,428	32.5
한 국	1,251,640	1,588,083	26.9	3,549,981	123.5	2,117,874	58.6

③ 과실·곡물 발효주 (HS: 2206)

(단위 : US\$, %)

국가별	2001	2002		2003		2004 (1~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15,269,399	12,973,708	-15.0	11,312,814	-12.8	4,114,696	-38.6
한 국	92,928	203,694	119.2	177,040	-13.1	0	-100

④ 무변성 에틸알콜(80%이상) 및 기타 변성주정 (HS: 2207)

(단위 : US\$, %)

국가별	2001	2002		2003		2004 (1~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11,247,642	15,050,729	33.8	13,727,324	-8.8	5,759,557	-19.2
한 국	0	200,640	-	13,420	-93.3	0	-100

⑤ 종류주 (HS: 2208)

(단위 : US\$, %)

국가별	2001	2002		2003		2004 (1~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36,645,721	32,836,687	-10.4	36,413,852	10.9	18,473,734	10.8
한 국	48,154	171,172	255.5	386,666	125.9	202,170	409.0

한편 과실 및 곡물 발효주는 매년 감소 추세이며 특히 2004년 상반기 중에는 전년동기비 38.6%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03년 총수출액은 US\$ 11백만 이었으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2003년 점유율 85%), 싱가폴(4.2%), 뉴질랜드(3.6%), 대만(1.6%), 한국(1.6%) 등임

증류주(HS 2208류)의 경우 2002년 수출이 전년비 10% 이상이나 감소 되기도 하였으나 2003년과 금년 상반기 중에는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3년 총 수출은 US\$36백만으로 주요 수출국은 뉴질랜드(51%), 일본(7%), 홍콩(4%), 프랑스(4%), 피지(4%), 캐나다(3%) 등이며, 한국은 US\$386,666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음

2) 주류별 수입현황

호주의 음료(HS 22류) 전체 수입을 보면 2002년 전년비 동일 수준 이었으나 2003년 이후 20% 이상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2003년의 경우 총 수입은 US\$ 472백만으로 전년비 25%,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전년동기비 29% 증가한 US\$ 243백만을 기록하여 주류의 전반적인 수입 증가세를 입증하고 있음.

2003년과 금년에는 베르못과 과실·곡물 발효주를 제외한 전품목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맥주, 포도주, 증류주(소주 포함)의 수입증가세가 현저함. 맥주의 경우 2003년 수입실적은 US\$ 49백만으로 전년대비 20.4% 증가 하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네덜란드(25% 점유), 멕시코(21%), 독일(14%), 영국(10%) 등이며, 한국의 경우에는 US\$59,986으로 0.1%에 불과함. 2003년 한국(8.9% 감소)과 아일랜드(95.3% 감소)로부터의 수입만 감소하고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2004년 상반기중에는 영국, 미국, 덴마크, 필리핀, 헝가리, 아일랜드로 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US\$31백만으로 전년동기비 39%의 급신장을 보이고 있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US\$33,306으로 전년동기비 19% 상승 시현) 포도주는 2003년 수입이 총 US\$97,834,869으로 전년비 32.4% 증가를 보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US\$44백만으로 45% 점유), 뉴질랜드(30%), 이태리(14%), 스페인(2%), 미국(1.5%)이며, 한국은 US\$609로 거의 시장점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04년 상반기의 경우 전년동기비 37.4% 증가한 US\$45백만을 시현하고 있으며, 그리스 및 남아공을 제외한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US\$1,012 임)

과실·곡물 발효주는 2001년 이후 2개년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금년 상반기 중에 US\$3,159천으로 급격한 증가세(124.2%)를 보이고 있음. 주요 수입국은 영국, 일본, 중국 등의 순이며, 한국의 경우 200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금년 상반기 중에는 US\$42,339로 전년동기비 145.5%의 신장을 보이고 있음. 한국의 청주, 약주, 사과주, 배술 등 곡물과 과실 발효주가 동 실적에 해당되며, 특히 소주류를 제외한 신제품의 한국산 주류들이 2206류로 분류되어 통관되고 있음.

증류주의 경우 2002년에만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3년 및 2004년에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의 국가별 수입실적을 보면 총수입 US\$244백만중 영국이 US\$81백만으로 33.3% 점유,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28.2%), 아일랜드(11.9%), 프랑스(8.2%), 뉴질랜드(7.4%)

순이며,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US\$153,364로 0.06%의 시장점유를 보이나 2002년에 비하면 207.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의 소주류가 종류주(HS 2208)로 분류되어 통관됨으로 인해 원가가 비싼 위스키 등 양주와 같이 종류주로 분류되며 고관세 및 높은 내국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1병당 1,000원 안팎인 소주가 호주에서는 12,000원 정도에 소매되고 있는 실정으

로 중급 포도주의 소매가격이 5,000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소주에 적용되는 중과세로 인한 고가격화는 현지 마케팅의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고 있음. 소주의 대중화 및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수출할때 적용되는 HS Code(2203: 종류주)를 실제 가공도 및 원료의 배합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2206(과실 또는 곡물발효주)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4〉 연도별 및 품목별 수입실적(HS 22류 총괄)

(단위 : US\$, %)

국가별	2001	2002		2003		2004 (1~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377,786,191	378,983,787	0.3	472,247,182	24.6	242,837,924	28.9
비감미 음료	7,264,914	7,099,789	-2.3	10,692,353	50.6	6,699,481	31.9
감미 무알콜음료	36,184,070	38,847,431	7.4	53,204,709	37.0	32,309,810	42.9
맥 주	30,797,143	40,454,421	31.4	48,720,696	20.4	31,320,335	39.0
포 도 주	52,297,864	73,887,302	41.3	97,834,869	32.4	45,087,553	37.4
베 르 뜻	3,768,171	3,680,222	-2.3	1,517,233	-58.8	570,900	-25.0
과실 · 곡물 발효주	29,936,628	10,118,456	-66.2	6,902,434	-31.8	3,159,266	124.2
변성주정	1,635,913	1,815,371	11.0	2,496,430	37.5	2,240,383	134.7
종 류 주	210,700,315	198,194,384	-5.9	244,443,149	23.3	117,185,854	18.1
식초 및 초산	4,201,173	4,886,411	16.3	6,435,309	31.7	4,264,342	38.5

〈표5〉 품목별 및 국가별 수입실적 (국가별 세부 수출실적은 원문참조)

① 맥 주 (HS: 2203)

(단위 : US\$, %)

국가별	2001	2002		2003		2004 (1~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30,797,143	40,454,421	31.4	48,720,696	20.4	31,320,335	39.0
한 국	31,297	65,828	110.3	59,986	-8.9	33,306	19.0

② 포도주 (HS: 2204)

(단위 : US\$, %)

국가별	2001	2002		2003		2004 (1~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52,297,864	73,887,302	41.3	97,834,869	32.4	45,087,553	37.4
한 국	1,699	284	-83.3	609	114.4	1,012	-

③ 과실 · 곡물 발효주 (HS: 2206)

(단위 : US\$, %)

국가별	2001	2002		2003		2004 (1~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29,936,628	10,118,456	-66.2	6,902,434	-31.8	3,159,266	124.2
한 국	281,466	61,962	-78.0	60,530	-2.3	42,339	145.5

④ 무변성 에틸알콜(80%이상) 및 기타 변성주정 (HS: 2207)

(단위 : US\$, %)

국가별	2001	2002		2003		2004 (1~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1,635,913	1,815,371	11.0	2,496,430	37.5	2,240,383	134.7
한 국	0	0	-	0	0	239,878	-

⑤ 증류주 (HS: 2208)

(단위 : US\$, %)

국가별	2001	2002		2003		2004 (1~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210,700,315	198,194,384	-5.9	244,443,149	23.3	117,185,854	18.1
한 국	68,629	49,935	-27.2	153,364	207.1	83,704	6.53

II. 지원제도 및 정부규제

1. 지원제도

2000년 7월1일 WET (Wine Equalisation Tax) 도입 및 2004년10월1일 동 세제의 개선으로 생산업체의 세금 환급, 수출업체의 부가 가치세 환급 및 수출보조금의 사후 정산 지원,

그리고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세금 환급을 연간 도매매출액의 29%까지 확대하여 최대 A\$290,000(약 238백만원) 까지 환급받게 하여 생산업체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 수출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10%)까지 환급해주고 있

음.(한국과 동일)

수출보조금(EMDG: 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 지원 : 수출업체의 경우 출장경비, 해외마케팅 경비 등을 사후에 정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지원 : 최적의 품종개발, 발효기술의 연구개발, 품질 유지관리 기법의 연구, 해외 마케팅 기법 교육훈련 및 지원 등 주류 생산, 품질관리, 판매와 관련된 다각적 방면에서의 연구개발, 기술습득 지원을 하고 있음.

2. 정부 규제사항

국가 권장산업인 포도주 산업은 품질의 세계 일류화를 위해 고율의 WET 세금 선납 및 영업 성적을 반영한 후 환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제품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수출허가 제를 운영하고 있어 우수하지 못한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의 경우 5헥타 아르(15,125평) 이상의 자체 농장을 갖고 있어야 수출 허가 및 면허를 부여하고 있음. 포도주 산업은 3가지 업계 부담금(Wine Grapes Levy, Grape Research Levy, Wine Export Charge)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동 재원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연구개발, 신기술 및 정보 습득,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III. 주류 수입관리 제도

1. 수입허가 요건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상 소재지 주정부산하 주류유통업 허가기관(New

South Wales 주의 경우에는 Department of Gaming and Racing 산하의 NSW Liquor Administration Board)에서 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상표상의 성분표시 부착이 의무사항이며 상표 라벨링은 영어로 표기하며, 필수 기재사항은 제품명, 용량, 알콜농도, Standard Drinks, 첨가물 내역, 알러지 유발가능 물질의 공표, 업체명 및 주소, 원산지 등을 기재하여 함. 소주의 경우 한국내 내수용은 감미료로 Stevioside를 사용하지만 호주의 식품위생법(Food Standards)에서는 위해한 첨가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주를 수입을 원한다면 제조업체가 동감미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할 것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되지 못하고 Menai 폐기소각장에서 전량 폐기됨

2. 수입 절차

주류도매유통업으로 면허를 받고 주류를 수입하게 되면 관세, 부가가치세(GST) 등을 납부하고 임시 통관을 하여 호주 연방 검역청(Australian Quarantine Service)이 검역장소로 지정한 하주의 창고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게 되며, 이 상태에서는 출고하여 시중에 판매를 할 수 없음. 이후 호주 연방 검역청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지정된 실험소에서 성분이 라벨링상의 내용과 부합되는지 인체에 위해한 성분은 없는지 검사를 받게 되며 이때 주정부의 보건부에 동 결과가 통보되며 이것이 통과되면 제품을 출고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함

IV. 주류 관세

호주 HS 코드별	호주 HS 코드별	호주 HS 코드별
2003	맥주	
00.20.10	- 알콜농도 1.15% 미만	0%
00.31.15/16	- 알콜농도 1.15~10%	리터당 A\$34.66
00.39.26	- 기타	리터당 A\$58.72
00.6	용량 48리터 미만의 개별포장 제품	
00.61.01	- 알콜농도 1.15~3% 미만	리터당 A\$29.74
00.62.11	- 알콜농도 3~3.5% 미만	리터당 A\$34.66
00.69.20	- 기타	리터당 A\$34.66
00.7	용량 48리터 이상의 개별포장 제품	
00.71.30	- 알콜농도 1.15~3% 미만	리터당 A\$5.94
00.72.40	- 알콜농도 3~3.5% 미만	리터당 A\$18.65
00.79.50	- 기타	리터당 A\$24.40
2204	포도주	
10	발포성 포도주	
10.21.21	- 알콜농도 1.15% 미만	5% DCT: 5% DCS: 4%
10.23.23	- 알콜농도 1.15~10% 미만	5% 및 리터당 A\$34.66
10.29.29	- 기타	5% 및 리터당 A\$58.72
10.8	기타	
10.81.41	- 알콜농도 1.15% 미만	5%
10.83.43	- 알콜농도 1.15~10% 미만	5% 및 리터당 A\$34.66
10.89.49	- 기타	5% 및 리터당 A\$58.72
2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콜 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것)	
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1.10	- 알콜농도 1.15% 미만	5%
21.20	- 알콜농도 22% 미만 회포도주,붉은 포도주,보강 포도주	5%
21.30.50	- 기타 포도주 알콜농도 1.15~10% 미만	5% 및 리터당 A\$34.66
21.90	- 기타 포도주 알콜농도 20% 미만	5% 및 리터당 A\$58.72
29.10	- 포도즙, 알콜농도 1.15% 미만 (테이블 와인 포함)	5%
29.30.31	- 기타, 알콜농도 1.15~10% 미만	5% 및 리터당 A\$34.66
29.90.41	- 기타	5% 및 리터당 A\$58.72

호주 HS 코드별	호주 HS 코드별	호주 HS 코드별
30	기타 포도즙	5%
2205	베르못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	
1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0.10.20	- 알콜농도 1.15% 미만	5%
10.30.30	- 알콜농도 1.15~10% 미만	5% 및 리터당 A\$34.66
10.90.40	- 기타	5% 및 리터당 A\$58.72
90	기타	
90.10.11	- 알콜농도 1.15% 미만	5%
90.30.13	- 알콜농도 1.15~10% 미만	5% 및 리터당 A\$34.66
90.90.14	- 기타	5% 및 리터당 A\$58.72
2206	기타의 발효음료	
00.30.20	- 2204 이외의 포도주, 2208로 분류 되지 않은 것	0%
00.41.40	- 2207 성분을 함유한 것	5% DCS: 4% DCT: 5%
00.42.41	- 2208 성분을 함유한 것 (사과주, 배술, 청주, 약주, 탁주)	5% DCS: 3% 및 알콜농도에 따라 종량관세 부과
00.5	별도수입시 2207로 분류될 수 있는 것	
00.51.45	- 알콜농도 1.15% 미만	5% DCS: 4% DCT: 5%
00.52.46	- 알콜농도 1.15~10% 미만	5% 및 리터당 A\$34.66
00.59.47	- 기타	5% 및 리터당 A\$58.72
00.6	별도수입시 2208로 분류될 수 있는 것	
00.61.50	- 알콜농도 1.15% 미만	5% DCS: 3%
00.62.51	- 알콜농도 1.15~10% 미만	% 및 리터당 A\$34.66
00.69.52	- 기타	5% 및 리터당 A\$58.72
00.7	2203 이외의 맥주류, 48리터 미만의 용기에 넣은 것	
00.71.01	- 알콜농도 1.15% 미만	0%
00.74.05	- 알콜농도 1.15~8% 미만	리터당 A\$29.74
00.75.11	- 알콜농도 3~3.5% 미만	리터당 A\$34.66
00.78.15	- 기타	리터당 A\$34.66
00.8	2203 이외의 맥주류, 48리터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00.81.30	- 알콜농도 1.15% 미만	0%

호주 HS 코드별	호주 HS 코드별	호주 HS 코드별
00.82.35	- 알콜농도 1.15~3% 미만	리터당 A\$5.94
00.83.40	- 알콜농도 3~3.5% 미만	리터당 A\$18.65
00.89.50	- 기타	리터당 A\$24.40
00.9	기타	
00.91.60	- 알콜농도 1.15% 미만	0%
00.92.61	- 알콜농도 1.15~10% 미만	리터당 A\$34.66
00.99.62	- 기타	리터당 A\$58.72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및 변성 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	
10.00.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순도 80% 이상	5% 및 리터당 A\$58.72
20	변성 에틸알콜 및 기타 변성주정	
20.10.41	-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는 애타놀	5% 및 리터당 A\$0.38143
20.90.42	- 기타	5% DCS: 4% DCT: 5% 및 알콜농도에 따라 종량관세 부과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농도 80% 미만의 것), 증류주, 기타 주정 음료	
20.10	- 포도주로 만든 브랜디 (5리터 이하 용기 및 기타의 것)	5% 및 리터당 A\$54.83
20.90	- 기타	5% 및 리터당 A\$58.72
30.00	- 위스키 (알콜농도 57% 미만 또는 기타)	5% 및 리터당 A\$58.72
40.00	- 럼주, 태피아 (알콜농도 57% 미만 또는 기타)	5% 및 리터당 A\$58.72
50.00	- 진 및 제네바 (알콜농도 57% 미만 또는 기타)	5% 및 리터당 A\$58.72
60.00	- 보드카	5% 및 리터당 A\$58.72
70.00	- 리큐르류 및 코디얼 (인삼주 해당)	5% 및 리터당 A\$58.72
90	기타	
90.10	- 알콜농도 1.15% 미만	5% DCS: 3%
90.20	- 알콜농도 1.15~10% 미만	5% 및 리터당 A\$34.66
90.90	- 기타 (소주, 고량주 해당)	5% 및 리터당 A\$58.72

자료) 호주 관세청(Australian Customs Service)

참고) - DCS : 개발도상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포함)

- DCT :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DCS와 함께 세율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 DCT가 우선 적용되며, DCS/DCT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됨)

V. 주류 내국세

주류내국세(Excise)는 각주정부의 주류관리 담당부서에서 징수하였으나 호주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방정부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으로 징수권이 이전되었음. 포도주를 제외한 모든 주정의 내국세는 Excise Tariff Act 1921에 의거 징수 되고 있으며, 국가 권장산업인 포도주에 대해서는 품질향상을 위한 규모의 경제 확보를 고율의 포도주세 선납부 및 후환급(Rebate)의 세제 혜택을 내용으로 하는 Wine Equalisation Tax Act 1999를 신규 제정하여 타 주류와는

별도로 2000년7월1일부터 징수하고 있음. 그간 사용해 오던 판매세(Sales Tax로서 관세의 개념과 흡사하여 품목별로 국내 보호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였음, 포도주의 경우 41%를 부과했었음)를 폐지하고 2000년7월1일 부로 신규 내국세제인 부가 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GST, 일부 면제품목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유통각 단계 별로 10%씩 부과함)가 도입 발효됨에 따라 포도주류는 Wine Equalisation Tax(WET) 29%를 적용받고, 기타 주류에는 [표6]에서와 같이 알콜 함량에 따라 주류 내국세(Excise)를 부과하고 있음

<표6> 주류 내국세 세율 현황 (2004.8.2일 시행 신규 세율)

구 분	상 품 내 역	내 국 세
맥 주	개별 용기가 48리터 미만의 것으로 알콜농도 3% 미만의 것	알콜 리터당 A\$30.49
	개별 용기가 48리터 미만의 것으로 알콜농도 3~3.5% 미만의 것	알콜 리터당 A\$35.53
	개별 용기가 48리터 미만의 것으로 알콜농도 3.5% 이상의 것	알콜 리터당 A\$35.53
	개별 용기가 48리터 이상의 것으로 알콜농도 3% 미만의 것	알콜 리터당 A\$6.09
	개별 용기가 48리터 이상의 것으로 알콜농도 3~3.5% 미만의 것	알콜 리터당 A\$19.12
	개별 용기가 48리터 이상이 것으로 알콜농도 3.5% 이상의 것	알콜 리터당 A\$25.02
기타 주류	- 알콜농도 10% 미만의 것 - 혼합주류 포함	알콜 리터당 A\$35.53
브랜디		알콜 리터당 A\$56.21
위스키 등	과실 브랜디, 위스키, 럼 및 리큐르 소주, 인삼주 등	알콜 리터당 A\$60.20
기 타	알콜 농도 10% 이상의 것	알콜 리터당 A\$60.20

VI. 연료용 알콜

1. 기술개발 동향

호주의 연방정부의 총리실(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직속기관 The Australian Greenhouse Office 주관으로 Ethanol, Diesohol, Petrohol등 환경보호를 위한 운송기기용 대체연료의 개발 및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Kyoto Protocol의 이행을 주관하고 있음. 2003년 대체연료의 비교분석 연구를 위해 국영 연구기관인 CSIRO, RMIT Centre for Design, Southern Cross Institute of Health Research, Parsons Australia Pty Ltd, University of Melbourne 등과 공동으로 대체연료의 개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동 연구에서는 Ethanol, 디젤유와 에타놀과 유화제를 혼합한 Diesohol, 휘발유와 에타놀과 유화제를 혼합한 Petrohol,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Biodiesel, 식물성 Canola Oil 등의 내연기관 연료 대체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음. 알콜인 에타놀은 사탕수수 등 식물에서 대량 추출하고 있으며 열효율이 좋고 연소성이 좋아 휘발유와 혼합하여 사용(페트로홀)하고 있음. 연방 정부에서 휘발유와의 법정 배합비율은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 정부에 따라 배합 사용기준이 상이하며 사용을 금지하는 주도 있지만 보통 재질의 내연기관에 사용할 경우 높은 온도에서 강한 연소성으로 인한 부식 등의 단점이 있으나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식물자원을 이용하여 쉽게 추출할 수 있고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오염도가 거의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호주 정부 및 관

련기관(NRMA: National Road and Motorists Association)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에타놀의 상용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해왔음.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그간의 연구결과 에타놀 10% 배합은 자동차 엔진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2003년 7월 1일부터 에타놀의 혼합비율을 최고 10%로 하여 사용하는 것을 입법화하여 상용화를 허용하였으며 현재는 에타놀 20% 배합시의 타당성 연구를 진행중에 있음. 한편 사탕수수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Queensland 및 New South Wales 주정부는 자동차 연료(휘발유)에 에타놀을 10%까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탕수수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Queen 는 반면, South Australia 주정부는 에타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기도 함. Diesohol(에타놀 최고 30% 배합)은 시드니 주정부 운영 시내버스에 1993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 사용하여 연료로서의 합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음. 디소홀 역시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에타놀보다 Butadiene과 Benzene의 수치가 낮고, 기존 디젤유보다 황의 배출이 낮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

2. 연료용 알콜시장의 향후 전망

휘발유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에칠알콜인 에타놀의 연간 시장규모는 190억리터에 달하며, 호주 국내의 에타놀 생산능력은 CSR Sarina 정제소가 연간 8백만 리터, Manildra Nowra 정제소가 90백만 리터, Mossman Queensland 정제소가 40백만 리터, Coeambally Griffiths 정제소가 80백만 리터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임. 그리고 현재 South Australia 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에타놀의 사용을 입법화하고 상용화하고 있어 향후 에타놀의 혼합비율이 높아지는데 대한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뒷받침된다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3. 정부정책 방향

연방정부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환경보호 및 국내 사탕수수 산업의 부가산업 개발의 일환으로 연료용 알콜인 에타놀의 상용화를 위

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왔으며, 연방 차원에서 2003년7월1일부터 에타놀(최고 10% 배합)의 사용을 허용하였음. 아울러 현재 연방정부에서는 에타놀 배합 20% 상용화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연방차원에서의 연료용 알콜 사용 관련 정책은 더욱 긍정적으로 전개 될 것으로 보임. 에타놀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South Australia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정부는 에타놀의 상용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Queensland 주와 New South Wales 주는 에타놀(최고10% 배합)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Love doesn't just sit there, like a stone : it has to be made, like bread,
remade all the time, made new.

사랑이란 돌처럼 한번 놓인 자리에 그냥 있는게 아니다: 그것은 빵처럼
항상 다시, 또 새로 구워져야 한다.

- Ursula K. Le Guin -